

예비심사보고서

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】

의안번호

14

2026. 10. 13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. 8. 31.(남양주시장)

나. 회부일자 : 2026. 10. 7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(상정) 2026. 10. 12.~13. / (의결) 2026. 10. 13.

2. 예산안 규모

○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(일반+특별회계) 규모 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	증감률
총 계	476,889,778	447,468,370	29,421,408	6.58%
일 반 회 계	431,862,205	426,716,531	5,145,674	1.21%
특 별 회 계	45,027,573	20,751,839	24,275,734	116.98%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왕은선)

□ 기획행정위원회 부서별 예산 편성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안

-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,267억 1,653만 1천 원에서 1.21% 증가한 4,318억 6,220만 5천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.42%에 해당합니다.
- 주요편성 내용
 -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억 7,185만 8천 원 보다 0.48% 감소한 14억 6,477만 8천 원이며, 직통 문자민원 서비스 운영 8,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 -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9억 8,809만 8천 원 보다 10.24% 증가한 99억 837만 6천원이며, 하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 -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0억 6,679만 5천 원 보다 8% 증가한 97억 9,230만 6천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2,55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 -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9억 8,349만 7천 원 보다 1.66% 증가한 60억 8,263만 8천 원이며, 방송·영상 장비 유지관리 9,314만 1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 -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,548억 8,266만 6천 원 보다 0.41% 증가한 2,559억 2,345만 6천 원이며, 교차로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5억 원, AI기반 대시민 행정서비스 운영 9억 5,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
- 행정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95억 282만 원 보다 3.14% 감소한 479억 4,911만 7천 원이며, 사회복지제도 지원 6억 7,384만 4천 원 등을 증액 편성 하고,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.
-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으로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5,968만 2천 원 보다 7.91% 증가한 489억 4,629만 원이며, 남양주 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억 6,900만 원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- 행정복지센터 및 읍·면·동 소관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편성내용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.

○ 특별회계

- 특별회계(공유재산관리)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7억 5,183만 9천 원에서 116.98% 증가한 450억 2,757만 3천 원으로, 시 전체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31.31%에 해당합니다.

□ 종합의견

-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여건 변화와 국·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,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을 통해 기정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.
-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10.78% 증가한 수준으로,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6.58% 증가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확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.
- 일부 사업의 경우 단기간 내 집행이 필요한 추경예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, 또한 기존 예산의 조정 또는 집행잔액 활용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아울러, 특별회계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세입과 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이 편성된 만큼, 자원 활용의 적정성과 향후 재정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종합적으로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을 보강하기 위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. 다만, 추경예산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,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심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조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심사보고 요지

(단위: 천원)

소관	사 업 명	요구액	삭감액	조정액	비고
총계			△ 6,000		
홍보담당관		4,000	△ 1,000	3,000	
(63p/20p)	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	4,000	△ 1,000	3,000	
정책기획과		5,000	△ 5,000	-	
(67p/27p)	각종 협의회 운영	5,000	△ 5,000	-	

7. 심사결과

○ 「수정가결」